

**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**  
**일부개정법률안**  
(정태호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4434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0.

발 의 자 : 정태호 · 이학영 · 복기왕  
김주영 · 진성준 · 이주희  
이수진 · 곽상언 · 김준혁  
김태년 · 한병도 · 정준호  
의원(12인)

**제안이유 및 주요내용**

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,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 등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교육시설 공사에 따른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에 방해를 받거나, 학교 운동장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사 장비 및 폐기물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교육시설 공사와 관련한 별도의 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폐기물 등이 교육활동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사의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

도록 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2호 및 제20조의2 신설).

##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“교육시설 공사”란 교육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.

가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

나. 「전기공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

다.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

라.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에 따른 소방시설공사

마. 그 밖에 교육활동 및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

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교육시설 공사 안전관리) ①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폐기물 등이 교육활동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사의 시행자 등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- ②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공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 여부를 확인·점검하여야 한다.
- ③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공사의 완공 전까지 교육시설이용자가 위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고, 홈페이지에 해당 공사 일정을 게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요청, 제2항에 따른 확인·점검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11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| <p>제2조(정의) -----<br/>-----.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<u>“교육시설 공사”란 교육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가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나. 「전기공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다.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라.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에 따른 소방시설공사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마. 그 밖에 교육활동 및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</p> <p><u>제20조의2(교육시설 공사 안전관리) ①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폐기물</u></p> |
|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등이 교육활동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사의 시행자 등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②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공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 여부를 확인·점검하여야 한다.

③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공사의 완공 전까지 교육시설 이용자가 위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고, 홈페이지에 해당 공사 일정을 게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요청, 제2항에 따른 확인·점검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